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농진원)은 농식품 분야의 AI 융합 산업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AX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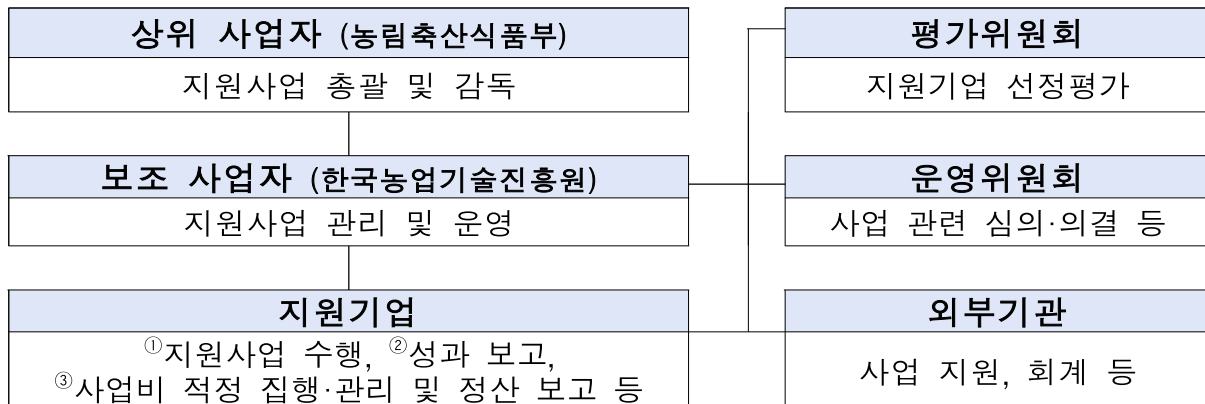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1 사업개요 및 공고사항

□ 사업개요

- (사업목적)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통한 농산업 신시장 창출 및 구조적 문제 해결로 국민 체감 혁신 성공 사례 확산
- (총 예산) 금71,430백만원(국고 70%, 자기부담금 30%)
- (사업기간) 2026~2027년
- (사업목표) ^(정량)필수 지표, ^(정성)기업 자체 지표'로 구분하여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 상용화 성공 및 파급효과 측정

< 추진체계 및 역할 >



□ 공고사항

- (공고기간) 2026. 3. 19.(목) 10:00 ~ 4. 17.(금) 16:00까지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www.koat.or.kr) 및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공고 게시
- (지원분야) 1~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한 농식품 분야(스마트농업, 그린 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축산, 농촌 관련 AI 제품 및 서비스)
- (지원대상) '중소기업 단독*' 또는 '기업 등 컨소시엄**'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 컨소시엄의 주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만 가능하며, 그 외 '중소·중견·대기업·연구기관·대학·협회·단체' 등은 참여기업으로 지원 가능
 -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도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 가능
- (모집규모) 25社 내 외(타입1: 15社 내 외/ 타입2: 10社 내 외)
- (지원규모) 20억원 내 외 * 기업(컨소시엄) 당 금액, 국고 기준(자부담금 제외)
- (지 원 금) 국고 70% 기준, 자기부담금* 30% 매칭

지원 유형		지원금액(국고)	지원 수	주요특징
타입1		20억원 내 외 (최대 40억원)	15社 내 외	1년 내에 상용화 가능한 제품/서비스
타입2	1년차	10억원 내 외 (최대 20억원)	10社 내 외	'27년까지 상용화 가능한 제품/서비스
	2년차	10억원 내 외 (최대 20억원)		

* 자기부담금 총액의 90% 이하는 현물, 10% 이상을 현금으로 구성해야 함 →
(예) 국고 18억원을 지원 받을 경우, 자기부담금 약 7.7억원(현금 0.77 이상)

- (지원자격) 지원유형별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증빙 제출 가능 기업

※ 3. 안내사항의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증빙내용 필수 확인

< 지원유형별 지원자격 >

구분	지원자격
타입1 (협약일 ~ 1년)	-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시연 및 검증이 완료된 단계(TRL 7~8) - 실제 고객 대상 PoC 또는 파일럿 판매 실적 존재 또는 생산/공급 체계 시험 운영 데이터 제시 가능 기업(상용화 성숙도)
타입2 (협약일 '27.12.)	- 유사 환경에서 시스템 검증 및 시제품 시험이 완료된 단계(TRL 5~8) - 시장 진입전략(Go-To-Market Plan) 문서화 또는 유통채널/파트너 후보 리스트 및 협상 문서 제시 가능 기업(상용화 성숙도)

○ (지원성과) ‘(정량)필수 지표, (정성)기업 자체 지표’로 구분

*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따른 성공·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자체 설정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예)
▶ 상용화 성공 건수	1건 이상/社	▶ AI 상용화 역량 강화(지재권 확보 등) ▶ 상용화 제품의 불량률 저감 ▶ 농촌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업 현안 해결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여
▶ 국민체감형 제품/서비스 확산 활동 건수	1건 이상/社	

○ (지원과제) 농식품 기반 신시장 창출, 국민 체감도·인식 제고를 위한 과제

※ 3. 안내사항의 농식품 부문 지원분야 필수 확인

- 지원 가능 분야 : 스마트농업/축산,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농촌 관련 AI 제품·서비스

대분류	소분류	
	카테고리	주요 활용 사례
예측·의사결정 지원	①재배	• 생육분석, 병해충 탐지·예찰, 기후·환경 예측 등
	②축산	• 가축 행동 탐지, 질병 예측, 축사 환경 모니터링
	③종자·육종	• 육종 형질 예측 등
	④유통·시장	• 농산물 가격·수요예측, 소비자 선호 파악 등
	⑤경영	• 소모품 가격예측, 공급량 관리, 경영의사지원 등
제어·자율화	①재배	• 양액·관수·생육제어, 과수관리, 방제자동화
	②축산	• 축사 환경 제어, 사양관리 자동화, 방역 등
	③작업·이송	• 자율주행 기반 농작업 수행, 수확 자동화, 방제 자동화 등
생산·공정 혁신	①제조·가공	• 제조 자동화, 공정제어 등
	②품질관리	• 식품 이물 검사, 신선도 유지·최적화 등
	③제품개발	• 소재 개발·발굴, 양산 제어·관리, 제품홍보 등
	④물류	• 재고관리, 자재발주 자동화 등
농촌·생활 서비스	①농촌 인프라	• 농촌 교통모델, 생활지원 등
	②소비·식품	• 맞춤형 영양·식단 제안 등
	③반려동물	• 건강모니터링, 질병예측, 케어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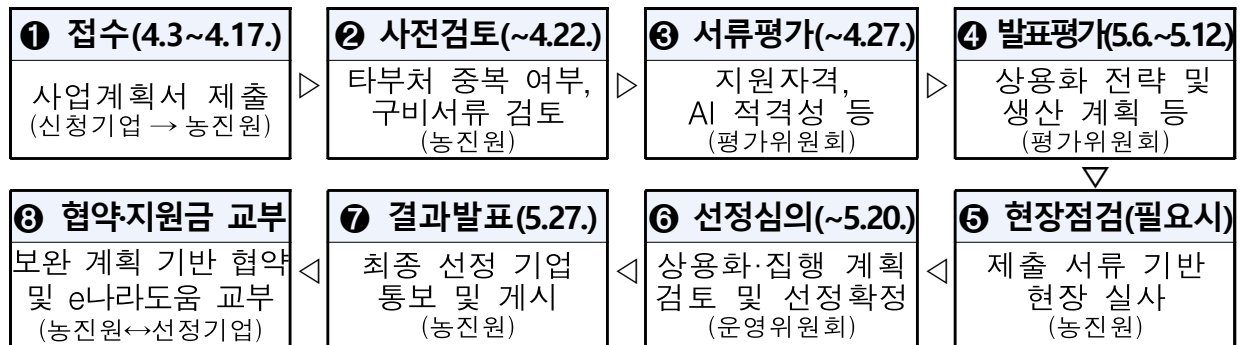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작성 시, 아래 분류를 확인하여 대분류 및 카테고리 기재(다수 기술 카테고리가 결합된 융복합형인 경우 지정과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음)

** 각 지원과제는 관계부처(기획예산처 등 11개 부처)와 협의하여 선정·조정될 수 있음

2

절차 및 기준

- ▶ 하기 모집(공고) 절차에 따른 실제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단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별도로 일정을 공지함
- ▶ 다음과 같은 경우 중복이 불가하오니 필수 확인 바람
- ① 컨소시엄 주관기업으로서 타부처 동일 사업 지원 불가(A기업이 컨소시엄 주관기업으로 B부처 사업에, 참여기업으로 C부처 사업 지원은 가능하나, 컨소시엄 주관기업으로 B·C부처에 동시 지원 불가)
- ② 당해연도 농식품부 유사사업 중복 수혜 불가(3. 확인 사항 참조)



○ (접 수) 2026. 4. 3.(금) ~ 4. 17.(금), 16:00까지 'www.agri-ai.kr' 접수

* 컨소시엄일 경우, 신청(주관) 기업이 컨소시엄 각 참여기업의 서류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사업계획서(지원금 집행계획, 인건비 증빙 등 단가 확인 서류 등)	필수 (주관기업)
2	주관기업 대표·사업(본 지원사업) 총책임자 및 컨소시엄별 책임자 이력	
3	기술·상용화 성숙도 증빙 서류	
4	중소기업 확인서(단일 참여 및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5	사업자등록증	
6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주관·참여기업)
7	재무제표 및 납세증명서(최근 3개년 모두)	
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3개년 모두)	
9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최근 1년 내)	해당 시 (주관·참여기업)
10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근로자와 동일한 증명서 및 명부)	필수 (주관·참여기업)
11	정보 제공 동의서	
12	자가진단서 및 사업신청서	필수 (주관기업)
13	가점 증빙 서류(상용화 대상의 수요처 확보 증빙)	해당 시 (주관기업)

○ (사전검토) 타부처 동일 사업 중복 신청 및 타사업 중복 수혜 여부,
필수 서류 구비 여부 검토 * 요건 미충족(중복 등) 및 서류 미비 등의 경우 심사 제외

- (서류평가) 사전검토 적격자 대상, 평가위원회로부터 총점의 60% 이상을 득한 기업(컨소시엄) 중, 지원유형별 지원 규모 2배수(내외) 선정

< 서류평가 기준(안) >

항목	세부항목	배점
적격성 (15)	1. 상용화 대상의 'AI 응용제품'으로서의 적격성	15
상용화 계획 (25)	2. 상용화(사업) 계획의 타당성 * 상용화를 위한 수립 계획의 적절성 및 목표설정 타당성 등	10
	3. 지원금 집행계획의 타당성 및 합리성 * 목표달성을 위한 각 비목별 집행 계획 및 단가의 적절성	15
가능성 (35)	4. 상용화 성공 가능성 * AI 기술 및 상용화 준비 수준 등 기반 상용화 성공 가능성	15
	5. 시장 점유 가능성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 존재 및 점유 가능성	10
	6. 성장(단기 성과) 가능성 * 상용화 후, 수요처 확보 및 조달 등 지속 성장 및 성과 창출 가능성	10
역량 (25)	7. 상용화 역량 * AI 상용화를 위한 인적 역량 및 보유 인프라 등의 역량	10
	8. 사업 수행 역량(회계사 평가 및 부여 항목) * 재무제표, 납세증명서, 신용평가등급 등 기반 사업 수행 역량	15
합 계		100

- (발표평가) 서류평가 적격자 대상, 평가위원회로부터 총점의 60% 이상을 득한 기업(컨소시엄) 중, 지원유형별 지원 규모 1배수(내외) 선정

* 평가 가점(수요처 확보 증빙)은 발표평가 총점수에 2점을 더하여 적용

< 발표평가 기준(안) >

항목	세부항목	배점
기술성 (22)	1. 기술·제품의 우수성 * 상용화 대상 AI 기술 및 제품·서비스의 차별성/우수성 등	10
	2. 기술 수준 * 상용화 대상 AI 기술 관련 원천기술 및 지재권 보유 등	12
시장성 (22)	3. 기술수요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수요 및 성장 가능성	10
	4. 경쟁력 확보 * 상용화 대상 시장 내,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기존 대비 우수성, 차별성 등 경쟁력 확보 가능 여부	12
역량 (33)	5. 상용화 수준 및 계획 * 상용화 달성을 위한 현재 준비 수준 및 향후 계획	13
	6. 상용화 역량 * 상용화 대상의 생산, 마케팅 및 자금조달 현황 및 계획 등	10
	7. 성장 역량(지속 가능성) * 상용화 이후, 개선·보완 및 고도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투자유치 계획 등 향후 기업 성장 및 지속 가능성	10
부합성 (23)	8. 사업계획 * 상용화 계획, 지원금 집행계획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타당성	13
	9. 사업목적·기여도·파급효과 * 본 사업의 목적(정책) 및 상용화에 따른 관련 산업 기여도,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현장점검) 발표평가 합격자 대상, 필요시 제출 서류·내용의 진위 확인*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인력이 주관 및 각 컨소시엄 현장을 방문하여 적/부 검토

< 현장점검 항목(안) >

점검내용 (제출서류 기반)	적합여부
1. 사업자등록증 진위(대표자, 주소지 등)	☐ 적 ☐ 부
2. 컨소시엄 책임자 진위	☐ 적 ☐ 부
3. 기술 및 상용화 준비수준 진위	☐ 적 ☐ 부
4. 참여인력 진위(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적 ☐ 부
5. 생산 및 사업장 운영 여부	☐ 적 ☐ 부
6. 사업계획에 제시된 시설·기술 구현 수준 등	☐ 적 ☐ 부

< 공통사항 >

- ① 각 평가의 총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 각 1인의 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산정함.
- ②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총점의 60% 미만의 점수를 득한 기업 및 현장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③ 각 평가 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우선
 -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 중 세부 항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
 - 가점(수요처 확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발표평가에 한함)
- ④ 발표평가 후, 평가위원회의 기업별 사업계획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은 이를 반영하여 선정심의 전 농진원으로 제출

○ (선정심의) 발표평가 합격자 대상, 운영위원회가 신청기업별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및 기업을 최종 선정**함

*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의 국내 산업 대응력을 고려하여 우선할 수 있음

** 지원유형별 최종 순위가 높은 순서부터 25社 내외(타입1: 15 내외 / 타입2: 10 내외)를 선정하고, 후순위 기업은 예비기업으로서, 지원분야별로 예비번호가 부여되며, 기존 선정기업의 협약 해제·해지 등 발생 시 높은 순위부터 추가 선정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음

○ (협 약) 지원 내용(지원금, 지원유형 등) 및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협약(농진원-기업) 체결(타입1: 협약일~1년 / 타입2: 협약일~'27.12)

* 협약 제출 서류: ①사업계획서(선정심의 ‘양호’), ②이행보증보험증권(국고 지원금 100%, 협약일~종료 후 1년), ③사업비 통장·카드 사본, ④자부담 입금 증빙

-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지침 등을 따름
- ▶ 본 공고문 및 매뉴얼 등 사업 관련 내용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기업·컨소시엄 참여기업)에 있음
- ▶ 본 사업의 신청자(선정 후 포함)는 공고문, 매뉴얼 등의 내용을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하며, 위 내용 중 상충 등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경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해석에 따름

- 접수 시, 필수 제출 서류(컨소시엄 참여기업 서류 포함) 중 누락이 있는 경우 서류·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탈락)되며 별도의 안내는 없음.
- 제출 서류 중 증빙(인건비,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등)과 관련된 자료는 객관적 확인(기관 발행 문서, 출금내역 등)이 가능한 것에 한함.
- 사업계획서는 협약 기간 내, 실질적 달성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공 양식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되(양식 요구 내용·항목의 누락 없이, 양식 외 추가 내용 가능) 단계별 평가 항목·기준에 적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 구성(국고·자부담) 비율을 준수하되, 본 사업 매뉴얼의 '지원금 집행 비목'의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함.
- 선정기업·컨소시엄에 교부되는 지원금은 선정심의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비 교부일 또한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상이할 수 있음.
- 지원금을 통한 취득 재산(장비 등)은 보조금 법령·지침에 따라 관리해야 함.
- 사업 신청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두는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사용해야 하며 및 각 회계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 사업 수행 관련 평가 및 점검 등에 따른 자료 제출, 협조 및 참석 등 요청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선정평가에 따른 계획 보완, 협약 후 등).

- 본 사업은 사업 운영 및 회계와 관련한 별도의 외부기관이 지정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해당 기관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상위 법령 및 본 사업 매뉴얼 등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금의 집행계획 작성 시 단일 금2,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하여 ‘지원금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함.
- 지원금의 자기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본 사업 매뉴얼의 ‘지원금 집행 비목’에 따라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정량적 지표인 ‘상용화 건수’의 ‘상용화’는 협약 기간 종료 전, 본 사업의 지원을 통한 제품·서비스의 판매 실적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함.
- 선정평가, 현장점검 등 모든 과정에 있어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본 지원사업 책임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협약 후, 사업 관련(모니터링, 중간평가 등)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함.
-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 간 또는 사업 수행에 따른 기관, 타 업체와의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해야 함.
- 이에 따른 책임은 주관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있으며,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농진원은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허위, 사업의 불성실 수행, 부정행위, 협약 위반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농진원은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AI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국내 사업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AI 모델 및 안정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응성을 고려하여야 함
- 본 사업으로 생성된 데이터 중 일부를 AI 허브*를 통한 개방을 요청할 수 있음 * 과기부·NIA 운영 ‘국가 AI 개발 지원 플랫폼(<https://aihub.or.kr>)’

○ 지원유형에 따른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증빙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술 성숙도 단계 및 증빙내용 >

단계	명칭	증빙내용
TRL 5	유사환경 시스템 검증	- 시제품(Prototype) 제작 보고서 - 성능시험 결과서 - 환경시험 결과
TRL 6	유사환경 시제품 시험	- 현장 테스트(Field Test) 결과 - 시스템 통합 시험 결과서 - 시험평가 보고서(Validation Report)
TRL 7	실제 운용환경 시스템 운용	- 실증(데모) 결과 보고서 - 사용자 피드백 및 개선결과 - 현장 적용 시험 데이터
TRL 8	시스템 완성 및 검증	- 양산 전 제품 검증 보고서 - 인증/인허가 획득 문서 - 신뢰성 시험 결과, 품질검증 보고서
TRL 9	실사용 및 성과	- 상용화 보고서, 납품 실적 - 사용자 만족도/운용평가 보고서 - 유지보수 데이터, 성능 모니터링 결과

< 상용화 성숙도 수준 및 증빙내용 >

상용화 성숙도 수준	증빙내용
상용화 전략 수립 (Commercial Strategy Defined)	- 시장 진입전략(Go-To-Market Plan) 문서화 - 유통채널/파트너 후보 리스트 및 협상 진행 문서 - 가격정책, 브랜딩 방향, 투자계획 문서
시범사업 및 초기 판매 (Initial Market Entry)	- 실제 고객 대상 PoC 또는 파일럿 판매 실적 문서 - 피드백 기반 제품 개선 보고서 - 첫 매출 발생 또는 계약 의향서 - 생산/공급 체계 시험 운영 데이터
시장 진입 완료 (Full Market Entry)	- 정식 제품 출시 및 상용 생산 체계 가동 - 매출 실적 지속적 발생(3개월 이상) - 고객 지원 및 품질보증 체계 운영 - 마케팅 및 유통 채널 가동 실적
안정적 상용화 (Market Expansion & Scale-up)	- 손익분기점 돌파 또는 투자 회수 가능성 입증 - 시장 점유율 증가 및 재구매율 상승 - 파트너십, 라이선스 계약 또는 해외시장 진출 성과 - 지속적 R&D·후속 제품 개발 로드맵 운영

○ 중복 수혜 불가 지원사업 목록은 다음과 같음.

지원사업명	전담(주관) 기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 (창업기업·첨단기술)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민간투자 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식품벤처·창업기업 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농식품 분야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분야(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축산, 농촌)

분 야		내 용
스마트농업	스마트 재배·생육관리	스마트팜 센서·환경제어, 생육 데이터 기반 재배 최적화
	데이터 통합·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AI 기반 농정 의사결정 지원
	자율주행·자동화 농기계	자율주행 트랙터, 방제·수확 로봇, 농업기계 자동화
	농산물 스마트 유통·물류	신선물류, 농산물 소분·패킹 자동화, 폐기물 분류·재활용 빅데이터 기반 생산·수요 예측, 물류 대응 시스템
	농산물 가격·수요 예측	빅데이터 기반 생산·유통 수급예측, 가격 변동 대응 시스템
그린바이오	종자	디지털 육종, 유전체 분석 등을 활용한 내병성·고기능성 작물 종자 개발 분야 등
	동물용 의약품	식물백신, 항체치료제, 유전자 편집 등을 활용한 축산·반려동물용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미생물	유용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소재, 프로바이오틱스, 생물농약·비료, 사료첨가제 개발 분야 등
	곤충	곤충을 활용한 기능성 사료, 식품, 의약품·화장품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분야 등
	천연물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 등에서 추출한 물질 및 성분을 활용하여 식의약품 소재 또는 제품 개발
	식품소재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개발 분야
푸드테크	세포배양식품 생산	배양육·대체 단백질의 신소재 발굴, 고효율 생산공정, 품질 고도화 등
	식물기반식품 제조	분리단백·대체지방 등 식물성 소재 활용 제품 개발 및 구조화 등
	간편식 제조	K-Food 특성 DB, 생산 포장 자동화 등 간편식 품질 향상 및 고도화 등
	식품 프린팅	3D 프린팅 기반 맞춤형 식품 제조 및 식품 전용 소재·잉크 개발 등
	식품 스마트 제조	AI·로봇 기반 협동 작업, 이물 검출 자동화 등 식품제조 고도화 등
	식품 스마트 유통	품질 판정 AI, 실시간 모니터링 등 농식품 유통 지능화·자동화 등
	식품 커스터마이징	개인 맞춤형식이설계, 유전정보 기반 기능식품 개발 및 생산 등
	외식 푸드테크	로봇조리, AI 기반 메뉴 추천·고객 분석 등 외식서비스 디지털화 등
	식품 업사이클링	농식품 부산물·저가 원료를 활용한 업사이클 원료 및 제품 개발 등
	친환경 식품 포장	플라스틱 대체 생분해성 포장소재 및 고차단성 유니소재 개발 등
스마트축산 (팻테크 포함)		ICT 연계 반려동물·대동물 관련 진단, 예측, 케어 제품/서비스 개발 등
		축사 환경 관련 자동관리·모니터링, 악취저감 기술 개발 등
		반려동물·대동물 관련 소재(식품)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		농촌 생활에 관한 편의, 복지, 의료 관련 제품/서비스 개발 등

* 생산·제조, 복지서비스, 헬스케어(건기식) 분야는 선정 시 관계부처 간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4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벤처창업본부 AX혁신성장팀

✉ shj25@koat.or.kr
☎ 063-919-1413

✉ woals447447@koat.or.kr
☎ 063-919-1418

✉ bigstone04@koat.or.kr
☎ 063-919-1419

5

접수방법 안내

- (접수·제출)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신청” 메뉴 → “사업신청 바로가기” 클릭
 - *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시, 다수 기술 카테고리가 결합된 융복합인 경우 지정 과제를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음
 - ** 제출 서류(사업신청서)에는 상용화 제품/서비스를 대표하는 신청 과제 의 대·소분류, 핵심 AI 기술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작성
- (질의응답)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F&Q” 메뉴
- (사전 질의) 사업 운영 누리집(www.agri-ai.kr) 접속 → “사업설명회 질의응답” 메뉴

- ※ 사업 설명회 안내 : 2026. 3. 26(목), 14시, 메리어트서울 그랜드볼룸(5F)
- 사전질의 접수(~3.23.) : 사업 누리집에 로그인 후 “사업설명회 질의응답”에 개별 작성
⇒ 주요 문의내용은 설명회 현장에서 종합하여 응답 예정
 - 사업설명회 참석 사전 신청(3.19.~25.) : 이벤트스(<https://event-us.kr/koatax/event/122613>)

농식품 부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기업당 20억원의 상용화자금 지원!
AI 응용·제조기업을 통한 농식품 산업 AX 혁신을 지원합니다.

2026.3.26(목), 14시
JW메리어트호텔서울 5층 그랜드볼룸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터미널역(지하철3,7,9호선)에서 연결)

[별지 제1호] 자가진단서

농식품 부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자가진단서

※ 신청인은 아래 항목들을 활용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지원자격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 및 기재(해당 부분에 '○'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사항		해당	미해당
1	신청한 상용화 대상은 농식품 산업 분야*에 해당 하나요? *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스마트축산, 농촌(생활환경 개선 등)		
2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인가요?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은 중소기업 恨)		
3	지원한 상용화 대상이 AI 기술과 관련이 있나요?		
4	지원 상용화 대상 관련 공고문에 기재된 지원유형별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를 충족하였나요?		
5	4번 질문의 답이 '해당함'일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었나요? * [참고] 기술 및 상용화 성숙도 기준		
6	타 부처의 동일한 지원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에 신청하였나요? (중복 신청 불가)		
7	아래 지원 제한 요건에 해당하나요? (컨소시엄 참여기업 포함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 없음)		
↳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상태이다(징수유예 포함)		
↳	신청기업이 신청일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	신청기업이 현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상태이다.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이다.		

본인(주관기업)은 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사실과 다름없음에 동의합니다.

(서명)

[별지 제2-1호] 사업신청서(종합)

농식품 부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과제 (공고문 '지원과제' 기준)	대분류	☐ 예측·의사결정 지원 ☐ 제어·자율화 ☐ 생산·공정혁신 ☐ 농촌·생활 서비스			
	소분류	☐ 재배 ☐ 축산 ☐ 종자·육종 ☐ 유통·시장 ☐ 경영 ☐ 작업·이송 ☐ 제조·가공 ☐ 품질관리 ☐ 제품개발 ☐ 물류 ☐ 농촌인프라 ☐ 소비·식품 ☐ 반려동물			
핵심 AI 기술	기본기술	☐ 기계학습(머신러닝) ☐ 딥러닝 ☐ 자연어처리(NLP) ☐ 음성인식합성			
	시스템구현	☐ 자율운행·로보틱스 ☐ 강화학습 ☐ 지식표현·추론 ☐ 기타()			
	AI인프라	☐ AI반도체 ☐ 컴퓨팅 인프라(HPC/Cloud) ☐ 데이터셋·데이터품질관리 ☐ 재배MLOps·AI거버넌스			
상용화 대상 명칭					
↳ 간단 설명					
신청(지원) 유형		☐ 타입 1		☐ 타입 2	
기술수준		☐ TRL 7	☐ TRL 8	☐ TRL 5	☐ TRL 6 ☐ TRL 7 ☐ TRL 8
상용화 준비 수준 (중복 표기 가능)		☐ 고객 대상 PoC 또는 파일럿 판매 실적 有 ☐ 생산 및 공급 체계 시험 운영 데이터 有 ☐ 고객의 계약 의향서 有 ☐ 고객 피드백 기반 제품 개선 보고서 有		☐ 시장 진입전략 문서(보고서 등) 有 ☐ 유통채널파트너 리스트 및 협상 문서 有 ☐ 가격 정책 브랜딩 방향 투자계획 문서 有	
컨소시엄 구성		☐ 여		☐ 부	
본 신청기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제출한 사업 신청 서류에서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 제재조치 및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 컨소시엄의 경우, 참여기업 모두 명기 및 날인, 본 페이지는 날인본으로 제출(PDF, 스캔 등) 2026년 월 일					
주관기업	기업(법인)명		사업책임자	이름	(인)
참여기업1			사업책임자		
참여기업2			사업책임자		
...			...		

[별지 제2-2호] 사업신청서(중소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

1. 기업정보

주관기업명	00법인 주식회사		설립일	0000.00.00	
대표자	홍길동		회계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생산물 (제품/서비스)					
매출액	2023	백만원	고용인원 (4대보험가입자)	2023	명
	2024	백만원		2024	명
	2025	백만원		2025	명
투자유치실적	유치시기	투자금	주요 투자처		
	~'24년	백만원	※ 주요 투자이력 관련, 연도/금액/투자처 기입		
	'25년	백만원			
사업장 주소	사무실				
	연구소				
	공장				
기업소개 (요약)	- 가나다 - 가나다				
특기 사항 (창업 이후 기업의 특기사항 연혁 순으로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2. 재무현황 ※ 재무현황은 증빙 기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신청일 기준 작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보유 지식재산권

순번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권리권자
1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 등		000000	
2				
3				
4				

4. 타 지원사업 수행 이력 ※ ('23~'26) 수행했거나 수행 예정인 국가/공공기관 지원사업 내역 기재

순번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원)	수행상태
1	사업명	00000	00.00.00 ~ 00.00	(단위 : 원)
2				
3				
4				

[별지 제2-3호] 사업신청서(컨소시엄 참여기업-기업별 모두 작성)

1. 기업정보 ※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2사 이상일 경우, 동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 기재

참여기업명	00법인 주식회사		설립일	0000.00.00	
규모 (해당시)	☐ 대 ☐ 중견 ☐ 중소		참여기업 분류 (사업이 아닌 경우)	☐ 기관 ☐ 대학 ☐ 기타	
참여기업 역할	- 가나다 - 가나다				
대표자	홍길동		회계담당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주생산품 (제품/서비스)					
매출액	2023	백만원	고용인원 (4대보험가입자)	2023	명
	2024	백만원		2024	명
	2025	백만원		2025	명
투자유치실적 (해당시)	유치시기	투자금	주요 투자처		
	~'24년	백만원	※ 주요 투자이력 관련, 연도/금액/투자처 기입		
	'25년	백만원			
사업장 주소	사무실				
	연구소				
	공장				
기업소개 (요약)	- 가나다 - 가나다				

2. 재무현황 ※ 재무현황은 증빙 기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신청일 기준 작성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총자산			
총부채			
자기자본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3. 보유 지식재산권

순번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권리권자
1	특허(등록·출원), 실용신안 등		000000	
2				
3				
4				

4. 타 지원사업 수행 이력 ※ ('23~'26) 수행했거나 수행 예정인 국가/공공기관 지원사업 내역 기재

순번	사업명	지원기관	지원금액(원)	수행상태
1	사업명	00000	00.00.00 ~ 00.00	(단위 : 원)
2				
3				
4				

[별지 제3호] 사업계획서

농식품 부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주관기업명	00법인 주식회사	설 립 일	0000.00.00
대 표 자	홍길동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법인등록번호	

상용화 대상 명칭	
--------------	--

신청유형	☐ 타입 1 (계약일로부터 1년 내 상용화)	☐ 타입 2 (계약일로부터 '27.12.까지 상용화)
컨소시엄 구성 여부	☐ 여	☐ 부
	↳ 컨소시엄 참여기업	(0社) A주식회사, B주식회사

사업비 구성 계획		자기부담금 (30%)		백만원		국고 (70%)		백만원		합 계 (100%)		백만원	
		↳ (현금) 자기부담금의 10% 이상		백만원		(현물) 자기부담금의 90% 이하		백만원					
성과목표	정량	필수 지표	상용화 건수 (제품 및 서비스)			1건							
			국민체감활동*			1건							
		기업 지표	투자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매출**	국내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수출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정성	1. 품질 및 생산관리를 통한 상용화 제품 불량률 저감(0.0%) 2. 기술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기술인력 0명 고용 등) 3. 개발 기술 및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0건) 4. 신규 판로(000주식회사 등) 확보(0건)											

* 상용화 AI 기술 및 효용성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박람회·제품설명회 등의 활동 건수

** 본 사업을 통한 상용화 대상(제품 및 서비스) 관련 국내 및 수출 매출을 기재

☐ 사업계획서 요약(2페이지 내외 작성)

상용화 대상명		* 본 사업을 통해 상용화하고자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등 명칭	
상용화 대상 상세	설명	※ 상용화하고자 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의 핵심 기술, 기능, 등 주요 내용 간략히 소개	
	이미지	※ 제품(서비스)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삽입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 사진(이미지) 또는 설계도 제목 >
상용화 배경 및 필요성		※ 위 상용화 대상의 선정 이유 및 그 필요성 등 기재	
주관기업-참여기업 협업 추진배경 및 역할		※ 협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지향점, 예상하는 협업 성과물 ※ 상용화를 위한 각 주체의 역량, 구체적인 역할 - 주관기업 : ~~~~ - 참여기업 : ~~~~	
추진전략		※ 상용화 대상에 접목된 핵심기술과 이 기술의 차별성 및 경쟁력, 시장 진입 및 상용화 전략 등 작성 ("AI 응용제품"으로서 내용 작성)	
목표시장 및 주요 고객층		※ 상용화 제품 최종 목표 시장의 규모, 현황, 전망, 주요 고객층	
실행가능성		※ 사업 및 협약 기간 내 상용화 결과 도출 가능성	
국민체감형 확산계획 및 효과		※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AI 응용제품'의 상용화 방안 및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기존 제품·서비스 대비 동 지원과제의 차별점 요약(1페이지 이내 작성)

과제 상세	
As is	To be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	※ 사업계획의 핵심 내용 중심, AI 응용에 관해 확연히 드러나도록 작성

☐ 사업계획서 상세(분량 제한 없음, 필요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등 삽입 가능)

1. 상용화 대상 개요

1-1. 상용화 대상(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 소개

※ AI 기술 적용 부분 및 기술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기능, 구조, AI 기술요소, 데이터 활용 등) 작성
※ 상용화 대상에 적용되고(될) 있는 AI 기술에 대한 개념을 설명(As-is, To-Be로 비교)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1-2. 기술적 차별성 및 혁신성

※ 기존 경쟁제품 대비 모방 난이도, 기술적 완성도 및 경쟁력(우위) 등
AI 기술 적용 제품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1-3. 기술성숙도(TRL) 수준 및 지식재산권 등

※ 현재 및 협약 기간 내 기술성숙도 달성 단계(세부 계획 및 전략 등)
※ 상용화를 위한 기술의 특허, 인증 등의 지식재산권 획득 현황 및 향후 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2. 상용화 대상 시장

2-1. 목표시장 현황

- ※ 목표시장의 수요 규모·상황, 전망, 주요 고객 특성, 기술 수준 등
- ※ 목표시장이 해외인 경우, 국내 및 해외를 분리하여 작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2-2. 국내·외 시장 점유(선도) 및 성장 가능성

- ※ 기존 경쟁제품 또는 기업 대비 시장에서의 필요성, 경쟁력 등 기반 시장 점유 및 선도 가능성 작성
- ※ 기업 역량 및 상용화 대상의 차별성 등 기반,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수요 기반)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 상용화 계획 및 전략

3-1. 상용화 준비 수준

※ 기존 준비 사항 및 협약 기간 내 상용화를 위한 시장·고객 정립, 투자유치 활동·계획, 가격정책·브랜딩, 수익구조 설정, 개선 계획, 인력·장비 보완 등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2. 시장진입 및 확산

※ 기 확보 고객, 유통채널 활용 방안 및 향후 확대 등 제품의 시장 진입 및 확산을 위한 세부 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3. 차별화

※ 상용화 및 향후 매출·시장 확대 등을 위한 고객, 유통, 판로, 기술, 홍보, 협력 등의 차별화 전략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4. 확 장

※ 상용화 대상의 기능·기술 고도화, 구독 모델, 데이터 서비스 등을 통한 확대(수익 구조 등) 계획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5. 위기 대응

※ 대내·외 사유로 사업계획서 전반에 기재한 상용화 계획 및 전략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대응 전략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3-6. 기대효과

※ 상용화 및 향후 확장 계획에 따른 통한 기업, 시장, 매출, 기술 등 파급 및 기대효과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4. 상용화 역량

4-1. 기반 시설

※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술 확보, 제품생산 등을 위한 보유시설의 수준(역량) 기재

○ 기반 시설

- 가나다

* 가나다

○ 연구 및 생산 시설·장비 보유 현황

연구시설· 생산 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내용)	활용시기	구입 가격	구입년도

4-2. 판로 및 마케팅

※ 상용화 대상과 관련한 판로 개척 및 마케팅을 위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 및 경쟁력 기재

○ 판로개척 및 마케팅 강점

- 가나다

* 가나다

○ 마케팅 노력(최근 3년)

추진 사항	추진 기간	세부 내용

4-3. 인적 역량

○ 조직도(상용화를 위한 업무분장 및 역할)

조직도 삽입

○ 대표자·사업책임자·직원 현황 및 역량

- ※ 상용화 달성을 위한 기술 확보, 판로 개척, 홍보 등 대표자 및 직원현황, 이력, 역량 등 기재
- ※ 본 사업 관련 주관기업의 회계담당자 지정 및 인원 필수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성명	직위	성별	학위 및 전공				담당 분야(업무)	채용 년월	본사업 참여율 (%)
				학교	전공	최종 학위	취득 년도			
1										
	주요 경력									
2										
	주요 경력									
3										
	주요 경력									
4										
	주요 경력									

⋮

4-4. 컨소시엄

- ※ 참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공동 연구, 판로, 기술도입 등 상용화 방향)
- ※ 각 주체의 컨소시엄 구성은 '상용화'를 위한 것으로, 상용화 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한 각각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예: 성과물의 즉시 납품, 공동제품 출시, 기존 인프라에 적용 등)
- ※ 주관기업 외,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명 및 협력사항, 역할 등을 아래 표에 상세히 기재
- ※ 본 사업 관련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회계담당자 지정 및 인원 필수 기재

○ 컨소시엄 배경 및 주체별 역할

- 가나다

* 가나다

참여기업명	주요 역량(기술)	협력 및 역할	비고
00제약	언어 모델 개발	공동연구개발	~'24.12
000	유통 판로 협력	제품판매를 위한 판로확보	협력 예정

⋮

○ 조직도(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의 역할 구분 및 체계)

조직도 삽입

○ 상용화를 위한 공동 노력

- 가나다

* 가나다

○ 사업 성과물에 관한 합의 사항

※ 지재권, 제품/서비스 등의 소유권, 계약체결, 이익 분배 등 상호 간 사전 합의 사항에 관해 작성

- 가나다

* 가나다

4-5. 사업 실적 ※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내수시장 진출 실적

유통채널명	진출시기	판매 아이템	판매금액
○○마트	2019.2.14.~2019.2.22.		○○○백만원
⋮			

○ 글로벌 진출 실적

수출국가수	수출액	수출품목수	수출품목명
○개국	○○○백만원	○○개	○○○, ○○○, ○○○
⋮			

○ 글로벌 진출 역량

해외특허 건수 (출원 제외)	국제인증 건수	국제협약체결 건수 (외국 현지기업과 MOU, NDA 등)
○건	○○건	○○건
⋮		

○ 자금조달 실적

조달금액	조달방식	조달처
○○○○원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융자, 국고지원금(사업명)	기관명
⋮		

○ 기타 실적

--

5. 성과 실현 가능성

5-1. 성과지표

성과목표	정량	필수지표	상용화 건수 (제품 및 서비스)		1건
			국민체감활동*		1건
		기업지표	투자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매출**	국내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수출	※ 목표수치 작성 (백만원)
	정성	1. 품질 및 생산관리를 통한 상용화 제품 불량률 저감(0.0%) 2. 기술 및 제품 고도화를 위한 기반 조성(기술인력 0명 고용 등) 3. 개발 기술 및 제품의 지식재산권 확보(0건)			

5-2. 실현 가능성

※ 5-1. 성과지표에 작성된 정량(필수·기업지표) 및 정성 내용의 달성을 위한 상세 내용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6. 상용화 일정 및 향후계획

6-1. 추진 일정(계획)

※ 아래 각 기간별, 상용화를 위한 필요 업무 및 추진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월 단위로 기재(상용화 완료 시점 표기 必)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6-2. 추진 일정(계획)표

※ 6-1에 기재한 내용 기반, 6-2 표기(6-1 대비 큰 범주로 표기하며 1페이지 내 작성)
 ※ 지원유형(타입)에 따라 아래 표의 추진 일정에 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종료일의 '월'까지 작성

구분	추진 계획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2	시설/장비 구축												
3	시제품 실증												
4	외주가공, 디자인개발												
5	양산형 제품 완성												
6	중간보고서 제출												
7	판로 확보												
8	홍보 활동 및 성과 창출												
9	최종보고서 제출												
⋮													

6-3. 향후(5년간) 계획

※ 향후 5년간 본 사업 성과의 안정화 및 기업 확장을 위한 연도별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계획 / 추가 기술 및 제품개발 / 상용화 대상의 고도화 계획 등을 기재

○ 가나다

- 가나다

* 가나다

7. 지원금 구성 및 집행계획

- ※ 지원금 구성 및 집행계획은 본 사업공고 [별지 4 지원금 사용 비목에 따르며,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 비목별 집행 기한에 맞춰 계획해야 하며, 최대한도 내에서 실소요 예상 금액으로 작성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전체의 지원금 구성 및 집행계획을 각각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국고지원금 중, 비목별 단일 건 금2,000만원 이상인 경우 및 인건비는 상세 계획 작성
- ※ 컨소시엄의 참여기업이 집행 가능한 지원금 비목은 인건비, 지급수수료, 재료비, 여비로 한정
- ※ 국민 체감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박람회·전시회 등 집행계획 작성(AFPRO 등)

7-1. 지원금 총괄표

지원금 합계	국고지원금	자기부담금	
		현금	현물
28.87144억 원 (총 25社 기준)	20억 원 (지원금 합계의 70%)	8.57144억 원 (지원금 합계의 30%)	
		0.857144억 원 (자기부담금의 00%)	7.714296억 원 (자기부담금의 00%)

7-2. 자기부담금(총 지원금액의 30%) 상세

(단위: 천원)

구분			비목	자기부담금액	산출근거
자기부담금	현금 (00%)	주관 기업 (00%)	재료비	300,000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인건비	200,000	- 신규 채용 인력(0명×000원)
			⋮		
		참여 기업 (00%)	재료비	300,000	-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인건비	200,000	- 신규 채용 인력(0명×000원)
			⋮		
	소계			75,000	
	현물 (00%)	주관 기업 (00%)	시설장비비	4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인건비	200,000	- 사업 책임자 인건비(0명×000원)
			⋮		
		참여 기업 (00%)	시설장비비	4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인건비	200,000	- 사업 책임자 인건비(0명×000원)
			⋮		
	소계			675,000	
	합계			750,000	

7-3. 국고지원금(총 지원금액의 70%) 상세

(단위: 천원)

구분	비목	금액	산출근거
국고지원금	주관기업	재료비	300,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인건비	200,000 - 신규 채용 인력(0명×000원)
		시설장비비	4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소계		-
	참여기업 1	재료비	300,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시설장비비	4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소계		-
	참여기업 2	재료비	300,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시설장비비	4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소계		-
	⋮		
합계		2,840,000	

7-4. 총 지원금 상세

(단위: 천원)

비목	금액	구분	산출근거	집행시기
재료비	300,000	자기부담금 150,000	- (현금) DMD소켓 구입(00개×0000원)	~'26.2.
			- (현물)	-
		국고지원금 150,000	- 전원IC류 구입(00개×000원)	'26.3.
인건비	200,000	자기부담금 100,000	- (현금) 신규 채용 인력(0명×000원)	'26.3~5.
			- (현물) 사업 책임자 인건비(0명×000원)	매월
		국고지원금 100,000	- 신규 채용 인력(0명×000원)	'26.6~12.
시설장비비	1,00,000	자기부담금 300,000	- (현금) 000시험장치(0식×000원)	~'26.5.
			- (현물) 000시험장치(0식×000원)	-
		국고지원금 700,000	- 000시험장치(0식×000원)	~'26.8.
용역비	400,000	자기부담금 100,000	- (현금) 000용역(0식×000원)	~'26.7.
		국고지원금 300,000	- 000용역(0식×000원)	~'26.9.
회계정산비	5,000,000	국고/자부담(현금)	* 고정금액,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기업 단독 또는 주관기업 기준으로 책정)	~협약종료
⋮				
⋮				
합계		3,590,000		

7-5. 인건비 상세

- ※ 신규 인력은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채용된 자에 한하며, 인력당 참여율은 최대 100%를 넘길 수 없음
- ※ 아래 표에 기재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불가
-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전체의 집행계획을 각각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단위: 천원)

비목	인력 구분	구분		채용 시기	성명	직위	월급여 (A)	참여기간 (B)	참여율(%) (C)	합계 (A×B×C)
인건비	기존	자기 부담금	현물	-	000	대표	4,000	12개월	80	3,840
		국고 지원금								
	⋮									
	신규	국고지원금		'26.7. 예정	000	대리	2,000	8개월	20	3,200
	⋮									
	합 계									

[붙임 1]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사업계획서 1-3)

[붙임 2] 지원유형별 자격요건 증빙 서류

[붙임 3] 개별 인건비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및 이체확인서)

[붙임 4] 지원금 집행계획서(비목별 단일 건 금2,000만원 이상, 용역비 및 시설장비비 집행 전체 건)

[붙임 5] 주관기업 대표, 사업(상용화) 총책임자 및 컨소시엄별 책임자 이력

[붙임 6] 가점 증빙 서류(상용화 대상의 구매의향서)

[붙임 7] 참여기업 협약서(자유양식, 사업계획 4-4 내용 포함 주관 및 참여기업 날인본)

[붙임 4] 지원금 집행계획서

- ※ 비목별 단일 건 금2,000만원 이상 모든 건에 대해 아래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 전체의 집행계획을 각각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지원금 집행계획서

(비목별 단일 건 금2,000만원 이상, 용역비 및 시설장비비 집행 모든 건)

참여형태	☐ 주관기업(기업명) ☐ 참여기업(기업명)		
비목구분	☐ 지급수수료 ☐ 용역비 ☐ 시설장비비 ☐ 재료비 ☐ 여비 ☐ 광고선전비 ☐ 회계정산비		
건명	구매·구축·홍보·자문 등 비목에 따른 성격을 포함하여 작성 (예) AI 적용 복합환경제어기 양산시설 구축 / 상용화 제품 홍보를 위한 영상제작		
집행금액	0,000,000 원	수행 기간	'00.00.00 ~ '00.00.00
계약대상	업체명	계약대상과 이해관계 여부*	☐ 여 ☐ 부
목표(적)	☐ 지원금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선·보완사항 또는 주요 목표(적)·필요성 ☐		
상세내용	☐ 비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상세사항 기재 (예: 장비 구매·구축의 경우, 해당 장비의 스펙 및 사용 용도, 설치 위치 등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도면·spec sheet, 사진 등 포함) ☐		
결과 활용 계획 및 방안	☐		
기타 사항	☐		

* 주관 또는 참여기업이 계약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여) 집행 불가하며, 이해관계란 지원금 집행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거나 제공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붙임 5] 주관기업 대표, 사업(상용화) 총책임자 및 컨소시엄별 책임자 이력

이력 사항

참여형태	☐ 주관기업(기업명) ☐ 참여기업(기업명)		
구분*	☐ 대표 ☐ 사업 총책임자 ☐ 사업 책임자		
지원유형	☐ 타입 1	☐ 타입 2	과제형태 ☐ 자유 ☐ 지정과제
상용화 대상 명칭			

학력사항	기간(연도)	학위명	학교명	학과(전공)
		00학사		
		00석사		
		00박사		
주요 근무경력	기간(퇴사년도)	기관명	직위(급)	주요업무
전문 자격증 취득사항	연 도	자격증명		발령처
상용화 및 사업 수행 이력·성과				
연도	사업명	성과 및 이력		주관부처(기업)

* 주관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사업 총책임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 표기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사업책임자만 표기 가능

[별지 제4호] 지원금 사용 비목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아래 기준을 참고, 협약 시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삭제 후 제출)

지원금 집행 비목	세부내용												
인건비	· 협약 기간 중 신규 채용한 인력 및 기존 고용인력에 대해 집행 가능하며, 신규 채용 인력은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 채용 인력에 한하여 집행 가능 · 인건비는 '고용보험' 가입 직원에 한하여 집행 가능하며, 지원기업 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 · 인건비 지급 대상인 대표, 사업 총책임자 및 직원은 참여율 100% 한도로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 가능 · 협약 기간 내 직원별 급여는 ①월급여×②참여기간×③참여율로 한다. ① 지원기업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봉계약서 총액을 12로 나눈 것단, 연봉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단기 인력 등) 인력의 경우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월 단위만 인정 ③ 정수만 인정(소수점 이하 불인정) · 현물 인정 범위는 사업공고일 전, 상용화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 채용된 인력으로 한하여 인정한다.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50% 이하로 편성해야 함(주관·참여기업 총합) · 증빙자료: 선정심의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제출 ① 4대보험가입확인서(참여인력 전체, 제출 월 기준) ② 4대보험납부확인서(참여인력 전체, 납부 월 기준) ③ 인력별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전년도 및 협약 당해 연도) ④ 참여인력 현황(참여율 포함) 및 인력별 급여 통장 사본 ⑤ 인건비 지출 내역(엑셀파일, 인력별 인건비 산출 산식 포함) ⑥ 인력별 급여 이체 확인서												
지급수수료	· (전문가 활용) 상용화와 연관이 있는 전문가 활용비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금액(원)</th><th>세부내용</th></tr><tr><td>특별</td><td>-</td><td>400,000 ~ 1,000,000</td><td>○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 해당분야 박사 등 최고 전문가 - 전직 장·차관(급) 및 전직 대학총장(급) - 위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td></tr><tr><td>일반</td><td>1시간</td><td>300,000</td><td>○ 해당분야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td></tr></table>	구분	단위	금액(원)	세부내용	특별	-	400,000 ~ 1,000,000	○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 해당분야 박사 등 최고 전문가 - 전직 장·차관(급) 및 전직 대학총장(급) - 위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	1시간	300,000	○ 해당분야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구분	단위	금액(원)	세부내용										
특별	-	400,000 ~ 1,000,000	○ 국내외 해당분야 저명인사 - 해당분야 박사 등 최고 전문가 - 전직 장·차관(급) 및 전직 대학총장(급) - 위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	1시간	300,000	○ 해당분야 전문가로 인정되는 자										

(I)	초과 (매시간)	150,000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등 - 전직 4급 이상 국장급 이하 공무원 - 위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일반 (II)	1시간	200,000	○ 일반강사(I) 외의 강사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등
	초과 (매시간)	100,000	
원고	A4 25행 1매당	30,000	○ 건당 최대 100만원 이내 - 미지급 : 목차, 표지, 간지, 참고문헌, 부 록, 이미 활용된 원고 등
번역	A4 25행 1매당	60,000 이내	○ 한국어 → 외국어
		35,000 이내	○ 외국어 → 한국어
통역	1인당	500,000 ~ 900,000	○ (6시간까지) 동시통역, 순차통역
		100,000/시간	○ (6시간초과) 동시통역, 순차통역

- (시험·분석) 제품 및 서비스의 시험·분석, 검사 등 상용화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으로 의뢰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지급
- (검·인증) 상용화 분야별 법적 근거로 의무 검정 대상, 상용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검정·인증 획득 비용으로 의뢰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 경비로 지급
- (지재권 획득) 상용화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특허 출원·등록, 저작권 등의 획득을 위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를 지급한다. 단, 지재권 획득 완료 시점은 협약 기간 이내 및 출원인이 지원기업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인 경우로 한정하며, 성공 보수금은 제외한다.
- (기술 보호) 기술 임치(갱신) 수수료
- (임차) ①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기기, 장비, 부수 기자재, 사무실의 임차 경비로 차량 임차는 제외하며, 협약 기간 내의 임차비용만 지급 가능, ② 국민 체감 활동을 제고할 수 있는 박람회·전시회 등 집행계획 작성(AFPRO 등)
- (공통) 지급수수료 집행 시, 해외 기관 및 전문가의 경우 각각 해당기관의 수수료 등 기준, 위 표에 따라 변동환율을 적용한 미화 기준으로 지급

- 전문가 활용 증빙자료
 - ① 전문가 통장사본
 - ② 전문가 이력카드
 - ③ 전문가 참여 승낙서
 - ④ 전문가 활용 결과보고서

	⑤ 이체 확인서 • 원고·번역·통역 증빙자료 ① 계약서(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②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③ 결과보고서 ④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 시험·분석 증빙자료 ① 계약서(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또는 접수증(신청서) ②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③ 의뢰기관이 발급한 결과서 ④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 지재산 획득 증빙자료 ① 계약서(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②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③ 특허 출원, 등록, 저작권 획득 인증 문서 ④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 기술보호 증빙자료 ① 계약서(견적서 포함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② 기술 임치증 ③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 임차(장비·기자재) 증빙자료 ① 계약서(장비·기자재: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②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③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 임차(사무실 등) 증빙자료 ① 임대차 계약서 ② 임대 공간 증빙사진 ③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용역비	• 지원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시제품 제작, 공정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 외부에 의뢰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 • 상용화 관련, 필요 부분에 한하여 용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상용화 대상의 원천·핵심기술 또는 제품개발 전체에 대한 용역은 불가 • 용역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 연관성 또는 관련 경험이 없거나, 지원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지원기업 간의 용역 수행 불가 • 용역비 선급금(계약대상에 지급)은 총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

	다 • 용역 산출물이 장치, 장비, S/W인 경우, 협약 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사후 점검 및 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용역 산출물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납품 받아야 한다. • 증빙자료 ① 용역계약서(사후점검 및 수리 관련 내용 포함) ②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개 이상, 2천만원 이상 건) ③ 과업지시서 ④ 용역사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⑤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⑥ 산출물 검수 조서(장치·장비: 증빙사진, S/W: 테스트 결과서, 인수인계서(구현 기능에 대한 내역 포함))
시설장비비	• 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상시 사용이 필요한 시설·장비(기술 고도화, 개선, 시험, 검사, 제조 등 에 필요한 H/W 및 S/W)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 • 사무용품, 집기, 가구, 사무용 PC, 복합기, 통신기기, 이동수단 등 범용 장비 및 사무용 S/W의 구입·임차의 경우 시설장비비 집행 불가 • 장비의 경우 중고품으로 구입 가능하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상 중고 제품 판매가 가능한 경우), 개인 간 거래는 불가 • 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협약 종료 시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원기업은 이와 관련하여 사후 점검 및 수리 등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구입·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납품 받아야 한다. • 시설장비비의 선급금은 총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구입·구축한 시설 및 장비는 임의처분이 불가하며, 향후 5년간 관리해야 한다(자산관리대장에 명기, e나라도움 시스템 등). • 현물 인정 범위는 사업공고일 전 구입한 것으로, 상용화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장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현물산정액 = (구입금액/5) × (사업수행 개월 수/12개월)) • 증빙자료 ① 계약서(사후점검 및 수리 관련 내용 포함) ②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2개 이상, 2천만원 이상 건) ③ 과업지시서(구축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포함) ④ 시설 및 장비구축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⑤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⑥ 검수 조서(증빙사진 포함)																												
재 료 비	· 구입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 상의 상용화 제품 및 서비스와 연관성이 있어야 함. · 구입한 재료는 협약 종료일부터 2개월 이전까지 납품 받아야 하며, 협약 기간 내 사용해야 한다. · 현물 인정 범위는 사업공고일 전 구입한 것으로, 상용화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 구입한 재료에 한하여 인정한다. · 증빙자료 ①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② 비교견적서(2개 이상, 2천만원 이상 건) ③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④ 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영수) ⑤ 검수 조서(증빙사진 포함)																												
여 비	· 사업계획과 관련된 국내·외 출장 여비로 실 지출 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기차, 버스, 발권 수수료를 포함한 항공), 숙박 비용에 한하여 실비 집행 · 국외 출장의 경우 사전에 전담기관 또는 운영위원회의 적정성 승인을 득하여 집행 가능하며, 타 사업 및 지원과 중복 불가(출장계획서 사전에 전담기관 제출 필수) · 항공운임은 Economy Class급에 한하여 집행 가능 · 국외 출장의 숙박비는 아래의 기준으로 집행(실비)할 수 있다 < 여비(숙박비) 지급기준 (1인 1박당 상한액) > <table><tr><th>구분</th><th colspan="4">지급기준</th></tr><tr><th>해외 (미국달러)</th><th>가급</th><th>나급</th><th>다급</th><th>라급</th></tr><tr><td></td><td>176</td><td>137</td><td>106</td><td>81</td></tr></table> < 해외여비 지급 시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 <table><tr><th colspan="2">구분</th><th>국가 및 도시</th></tr><tr><td rowspan="2">가 급</td><td>-</td><td>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td></tr><tr><td>아시아 오세아니아</td><td>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td></tr><tr><td rowspan="2">나 급</td><td>아메리카</td><td>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td></tr><tr><td>유럽</td><td>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td></tr></table>	구분	지급기준				해외 (미국달러)	가급	나급	다급	라급		176	137	106	81	구분		국가 및 도시	가 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아시아 오세아니아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나 급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구분	지급기준																												
해외 (미국달러)	가급	나급	다급	라급																									
	176	137	106	81																									
구분		국가 및 도시																											
가 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아시아 오세아니아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나 급	아메리카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다 급	중동 아프리카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아시아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아메리카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체코,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알제리,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급	아시아 오세아니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아메리카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	마케도니아, 에스토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몰도바,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고속도로 통행료 집행 가능 · 유류, 가스, 전기·수소 충전, 차량 유지 및 운행 비용은 집행 불가				
· 증빙자료 ① 교통비 증빙서류(국내·외) ② 출장계획서(국외) [별지 제16호] ③ 출장 결과보고서(국외[별지 제17호], 국내[별지 제18호])					
광고선전비	· 지원기업의 상용화 대상 제품 및 서비스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기타 마케팅 등의 경비				
	<table><tr><th colspan="2">광고선전비 지원내용 예시</th></tr><tr><td colspan="2">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 디자인) • 홍보를 위한 웹 및 모바일(APP) 홈페이지(수출용 외국어 포함) 제작 • 국내외 홍보물 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옥외, 온라인 및 SNS(검색엔진 마케팅 포함) 광고, 신문·잡지 </td></tr></table> · 홍보물 등 일회성·무작위 배포를 위한 기념품, 유니폼, 기프트콘 등 불가		광고선전비 지원내용 예시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 디자인) • 홍보를 위한 웹 및 모바일(APP) 홈페이지(수출용 외국어 포함) 제작 • 국내외 홍보물 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옥외, 온라인 및 SNS(검색엔진 마케팅 포함) 광고, 신문·잡지
광고선전비 지원내용 예시					
• 브랜드 디자인(BI·CI, 캐릭터, 포장 디자인) • 홍보를 위한 웹 및 모바일(APP) 홈페이지(수출용 외국어 포함) 제작 • 국내외 홍보물 영상 및 홍보물 제작 • 옥외, 온라인 및 SNS(검색엔진 마케팅 포함) 광고, 신문·잡지					

	· 협약 기간 내 홍보가 완료되어 홍보 결과 도출 및 보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해당
	· 증빙자료 ①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청구) ② 비교견적서(2개 이상, 2천만원 이상 건) ③ 계약서(해당시) ④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⑤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및 세금계산서(영수) ⑥ 결과보고서(집행 상세내역, 홍보 결과 및 성과, 홍보처 등)
회계정산비	· 지원기업이 집행한 총 지원금 및 월별 회계정산 수수료 · 지정 회계법인 통해 협약 종료 전까지 회계정산비용을 집행해야 한다. · 증빙자료 ① 세금계산서(영수) ② 회계정산보고서
공통 사항	· 모든 비목은 지원기업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후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 지원금을 집행한다. · 지원기업 자기부담금의 현물은 현금을 제외한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비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비목 간 총변동이 금2,000만원 이상인 경우, 용역비 및 시설장비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 운영위원회 심의 후 집행. 단, 자기부담금의 변동은 제외할 수 있음 · 증빙자료는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회계기관에 월별 제출 · 지원기업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비용은 집행 불가 · 이체확인서 및 세금계산서(영수) 외 카드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인정 · 지원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는 집행 불가하며, 정산 시 반납 · 위 표에서 '협약'이란 전담기관과 지원기업 간 협약을 말한다.

[붙임] 정보제공 동의 인원 목록

번호	구분	정보제공자	서명
1	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명 기재	이름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